



25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 보고

제102회기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이종석
서 기 최찬용

1. 조 직

- 위원장 : 이종석
- 서 기 : 최찬용
- 회 계 : 박석만
- 총 무 : 강태구
- 위 원 : 김광술

2. 회 의

1) 전체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7. 12. 22(금)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회원을 점명하니 5명 전원 참석하다.
- ② 성석교회 복귀처리위원회를 조직하다.
위원장 : 이종석 목사, 서 기 : 최찬용 목사, 회 계 : 박석만 장로, 총 무 : 강태구 목사
위 원 : 김광술 목사
- ③ 차기 회의는 2018년 1월 19일(금) 오전 11시 갖기로 하다
- ④ 관련자들 (서경노회, 함경노회 구(관북노회)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측과 서경노회 파송 임시 당 회장측에 공문을 발송하여 2018년 1월 15일 까지 총회로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기로 하다.
- ⑤ 100-102회 총회 내에 이루어진 회의에 관한 노회 탈퇴 노회가입에 관한 당회록, 공동회의록, 노회회의록, 노회임원 회의록을 요구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8. 1. 19(금)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회원 점명하니 5명 전원 참석하다.
- ② 전 회의록 낭독을 하니 위원 중 박성만을 박석만으로 자구 수정기로 하다. 관련자들에게 제출 토록 요구한 제반 서류중 100-102회 총회내에 이루어진 회의에 관한 노회탈퇴, 노회가입에 관한 당회록, 공동회의록, 노회회의록, 노회임원 회의록을 첨부하여 전 회의록에 기록기로 하다.
- ③ 성석교회에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고등법원 재판 과정을 위원장이 방청하기로 하다.
- ④ 차기 회의는 1월 30일(화) 낮 12시에 갖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18. 1. 30(화) 13:2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보다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차기 모임에 서경노회 (노회장, 서기, 성석교회 임시당회장, 성석교회 비상대책위원회 1인 / 함경노회 (노회장, 서기, 편재영씨) 를 차기 회의시 출석 요청키로 하다.
- ③ 차기 회의는 2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에 모이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18. 2. 22(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면담을 위해 편재영 씨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나, 이를 취소하고 편재영 씨 측 교인대표 1인으로 변경하여 통보하기로 하다.
- ③ 오후 12시 50분 까지 정회 하기로 하고 정회를 위해 박석만 장로로 기도하다.
- ④ 시간이 되어 김광술 목사 기도 후 속회하여 소환에 응한 대상자들에 대해
 - 가) 고법 판결의 내용을 아는가?
 - 나) 고법 판결을 인정하는가?
 - 다) 본 위원회의 지도에 순종하겠는가를 질의 한 바
 - 가-1) 알고있다
 - 나-1) 인정한다
 - 다-1) 순종한다고 대답하였다.

출석자 : 서경노회장 심시용 목사, 서기 권장혁 목사, 성석교회 노회 파송당회장 임창일 목사 성석교회 비상대책위원회 교인대표 지인남 은퇴장로 함경노회장 최윤길 목사, 서기 김낙선 목사, 증경노회장 한호범 목사
- ⑤ 차기 회의는 3월 5일(월) 오전 11시 대구 일심교회 (강태구 목사 시무) 에서 갖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18. 3. 5(월) 11:00

☞ 장 소 : 일심교회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성석교회의 고등법원 판결문, 탈퇴한 교회와 목사의 복귀에 대한 총회결의, 성석교회의 소속 처리에 대한 101회기 임원회 결의를 자세히 살펴보다.
- ③ 오후 2시 까지 식사를 위해 정회키로 하고 김광술 목사가 정회 기도를 하다.
- ④ 시간이 되어 최찬용 목사가 기도하고 속회하다.
- ⑤ 성석교회는 서경노회로 복귀토록 가결하고 결정문 작성은 이종석 목사, 강태구 목사, 최찬용 목사 3인에게 맡겨 작성하고 차기 전체회의에서 결정키로 하다. 차기 모임에는 신현필 목사



(당회장 직무대행), 지인남 장로, 시무장로 1인, 임창일 목사를 출석 요구키로 하다.

⑥ 차기회의는 3월 15일(목) 14:00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6) 제6차 회의

☞ 일 시 : 2018. 3. 15(목)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출석자를 확인하니 임창일 목사, 지인남 은퇴장로, 김희환 시무장로, 신현필 목사가 출석하다. 출석자 중 임창일 목사, 지인남 은퇴장로. 김희환 시무장로에게 먼저 질의하다.
 - 질의내용 -
 - 가) 직무 대행자가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가?
 - 나) 현 성석교회의 예배상황은 어떠한가?
 - 다) 직무대행자가 결정된 후 교회 상황은 어떠한가? 에 대해 공정하다. 예배 상황은 전과 같다고 답변하다.
 - 라) 다음으로 직무대행자 신현필 목사(평중노회 임마누엘교회 시무)에게 질의하다.
 - 질의내용 -
 - 마) 직무 대행자로 결정된 후 현재까지 한 일?
 - 바)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
 - 사)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그 한계 인식에 대해 폐쇄된 사무실 3실 개방, 편재영 씨의 당회 장실 퇴실 조치, 승합차 공익을 위해 사용토록 조치, 만기된 농협대출 연장 처리토록 하고자 한다. 직무 대행자로서 통상 업무만 한다고 답변하다.
- ③ 5차 회의에서 결정문 작성을 3인 위원에게 위임 한바, 준비된 결정 문안을 보고하니 만장일치로 받기로 결의하고 모든 위원들이 서명 날인하고 통지문을 보내기로 하다.
- ④ 성석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성석교회복귀처리 위원회에 일임한 바(본부제 102-335) 성석교회와 관련하여 접수된 서류가 있다면 본 위원회로 이첩해 주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총회 임원회에 보내기로 하다
- ⑤ 차기 모임은 임원에게 일임하다.

(7) 제7차 회의

☞ 일 시 : 2018. 4. 13(금)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둘로 나누어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성석교회의 화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측의 대표자들의 의견을 듣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다.
- ③ 본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대해 편재영 측은 사정이 있어 불출석 했으나, 추후에 출석 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해 오고, 서경노회 파송 당회장 임창일 목사 측은 출석함, 편재영 측은 추후 재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고 출석자(지인남 은퇴장로, 김희환 장로)의 의견(성석교회 현재 상황)을 청취하다.

2) 소위원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8. 3. 8(목) 14: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5차 전체회의(2018.3.5 오전 11시)에서 결정문 작성을 이종석 목사, 강태구 목사, 최찬용 목사 3인 에게 맡겨 준비토록 한 바 모여 결정문을 작성하다.
- ② 작성된 결정문을 차기 전체회의 모임「2018.3.15 (목) 오후 2시」에 보고하여 최종 결정키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8. 3. 29(목) 12: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출석자, 편재영 목사(소속 함경노회)를 확인하다.
- ② 출석자에게 성석교회의 분쟁의 출발, 진행과정을 듣다.
- ③ 본 위원회에서 출석자에게 총회헌법, 총회결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설명하다.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 최종보고

1. 총회 수입 사항

제102회 총회에서 서경노회장 심시용씨가 현의한 “제97회 총회 결의대로 성석교회를 서경노회로 복귀처리 청원의 건”은 5인 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되어 성석교회 복귀 처리위원장에게 통지되었다. (본부 제102-268호).

2. 결정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소속이며 서경노회로만 복귀토록 한다.

3. 결정 이유

- 1) 헌법 권징조례 제 35조에서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로 정하고 있다.
- 2) 책벌을 받은 자를 해벌하려면 헌법 예배모범 제 18장 해벌 제 7조 “벌 아래에 있는 교인이 그 벌 당한 치리회 소재지에서 먼 거리 되는 지방에 옮길 때에 회개함을 선언하고 회복함을 얻기 원하는 때는 본치리회 결의의 등록을 날인하여 그 회에 교부 할 수 있고 그 회는 자체가 처벌한 자와 같이 해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벌은 치리를 한 본 치리회만이 해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본 치리회가 결의하여 등록을 날인하여 교부한 회에서만 해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성석교회가 본 교단 서경노회 탈퇴 선언을 하고 서경 노회는 당시 담임이었던 편재영 목사를 면직하고 통보 하였으나 10일 이내에 상소하지 않음으로 서경 노회의 면직 판결은 확정 되었다.

- 3) 총회결의 사항
제100회 총회는 “교단을 탈퇴한 목사나 교회가 재가입할 경우 원래 소속 되었던 노회로만 재가입의 건은 탈퇴 당시 원 노회 소속 되었던 노회로만 가능하기로 하다.”라고 결의 했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100회 총회 이전에 탈퇴한 교회에는 소급 적용 할 수 없다고 하나 위 결의는 결국 헌법의 정신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어떤 교회가 노회의 허락 없이 탈퇴하였다가 다른 노회로 가입해도 된다고 한다면 총회의 이명 질서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노회나 총회의 질서 또한 무너질 것이며 권징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4) 총회임원회 결의 사항
제101회기 제 23차 총회 임원회(2017.7.6. 오전 11시)는 성석교회 관련 건을 심의하며 “소속에 관한 처리는 고등법원 판결 시까지 유보키로 가결하다.”라고 하였다. 이는 성석교회 소속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밝혀진다.

- 5) 법원 판결
서울 고등법원 제 27 민사부는 성석교회가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사건번호 2017나 2026438)에서 “이 사건 2013.4.17.자 교단 탈퇴 공고 및 2014.4.6.자 공동의회 결의에 의한 교단 탈퇴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면직 판결 당시 이 사건 노회의 소속이다.” 라고 판결하고 있다.

서울 고등법원 제 27 민사부는 성석교회가 제기한 직무 집행 정지 및 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 (사건번호 2018. 카합 20003) 소송에서도 “이 사건 2013.4.17. 자 교단 탈퇴 공고에 의한 교단 탈퇴가 유효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관 제11조에 근거한 이 사건

2013. 4.17 자 교단 탈퇴공고는 어느 모로 보나 효력이 없다.”라고 판결하며 여러 사유를 들고 있다. 위 판결로 보면 성석교회는 본 교단을 탈퇴 한 적이 없다.

1심이었던 서울 지방 법원의 판결도 고법의 판결과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2018년 6월 15일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18다 217967) 또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림으로 고등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었다.

- 6) 본 위원회는 모든 정황을 살피고 판단하건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 법원에서는 공히 성석교회의 서경노회 탈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교회법이나 총회 결의, 임원회 결의, 헌법 정신을 살피건데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소속이며, 만약 탈퇴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서경노회로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말긴 대로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소속이며, 서경노회로만 복귀토록 한다.”라고 결정한다.

4. 권면 사항

- 1) 총회 임원회는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바른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석교회 사건을 보면 지난 총회 임원회가 많은 혼란(서경 노회 소속인 성석 교회를 함경노회 「구 관북노회」가 받으라는 비정상적인 공문 발행 등)을 가져 왔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문제와 오해를 풀고 성석교회는 이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권면합니다.